

한식 음식점업 및 호텔·콘도업

외국인력(E-9) 특화훈련 참여 신청서

◆ 고용노동부는 '24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부터 한식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에 비전문 외국인력(E-9) 고용을 시범 도입하고 있으며,

◆ 입국 초기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능력 향상과 사업장 적응력 강화를 위해 한국 문화, 해당 산업의 특성, 산재 예방 수칙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특화 훈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외국인력(E-9) 특화훈련 안내>

- (훈련내용)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후 한국 사회와 직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산업안전보건 교육, 업종별 직무 기초교육**
 - (훈련대상) 취업교육(2박3일) 수료 후 사업주에게 인도된 비전문 외국인력(E-9)
 - ※ 취업교육은 한국문화, 근로기준법 등 대부분 업종인 서비스업의 공통 교육 실시, 특화훈련은 세부 업종별(예.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등) 수요를 반영한 필수 직무 능력 중심으로 훈련 실시
 - (훈련기관) 고용노동부의 '일반유급휴가훈련(5일 20시간 이상)' 위탁기관 공모·심사를 통해 선정된 위탁훈련기관
 - (훈련방식) 사업주에 외국인근로자 인도 후 1개월* 내, 합숙훈련(4박5일) 또는 출퇴근 훈련(5일) (※ 위탁훈련기관 공모 내용에 따라 결정)
- * 향후 국가별 입국 일정, 훈련 참여인원에 따라 사업장 인도 후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교육비(전액 무료) 및 인건비(훈련시간 비례 임금 지원, 최저임금의 150% 한도 지원)
 - ※ 향후 특화훈련 참여 사업주를 위한 인센티브 검토 중

◆ 사업주께서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력(E-9)이 한국사회에 신속히 적응하여 산업현장에 필수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특화훈련 참여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본 신청서는 외국인력(E-9) 특화훈련에 대한 사전 훈련 수요 파악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며, 향후 훈련 참여 의사 변경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신청인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귀사의 업종은 무엇입니까?

- ① 한식 음식점업(5611) ② 호텔업(55101) ③ 휴양콘도 운영업(55103) ④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55109) 중 호스텔업 ⑤ 건축물일반청소업(74211)(호텔·콘도 업체와 1:1 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 귀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업종, 사업자등록증 업종 등을 참고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면 됨

**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코드

2. 귀사의 사업장 소재지는 어느 지역입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3-1. 귀사의 E-9 외국인근로자 고용 예상인원은 몇 명입니까? ()명

3-2. 귀사가 특화훈련 참여를 희망하는 E-9 외국인근로자는 몇 명입니까? ()명

3-3. 귀사는 외국인력(E-9) 특화훈련에 참여할 의사가 어느 정도 있으십니까?

- ① 매우 있다 ②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있다 ⑤ 잘 모르겠다

4. 귀사에서 고용허가 신청한 E-9 외국인근로자 국적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필리핀 ② 스리랑카 ③ 네팔 ④ 베트남 ⑤ 태국 ⑥ 인도네시아 ⑦ 미얀마 ⑧ 몽골 ⑨ 우즈베키스탄 ⑩ 키르기스스탄 ⑪ 중국

5. 귀사에서 외국인력(E-9) 고용 시 부여할 업무를 고려하였을 때, 외국인력(E-9)에게 필요한 기초 직무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

2024년 월 일

확인자 사업장명: 대표자: (인)

[붙임] 일반유급휴가훈련 사업 안내

□ 개요

-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 지원금 외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일부 지원

□ 훈련 실시 대상

-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

□ 유급휴가 요건 등

- 연차 유급휴가가 아닌 유급휴가(통상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상시 근로자 150명 미만인 사업주)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거나, 계속하여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 (상기 미해당 사업주)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6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80시간 이상의 훈련 실시

□ 지원내용

- (훈련비)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 인원 × 기업규모별 지원율
- (임금) 소정훈련시간 × 최저시급(우선지원대상기업은 150%), 다만,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중 해당 훈련에 참여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체인력 임금) 소정근로시간 × 최저시급, 다만, 사업주가 채용일부터 훈련종료일까지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